

중요재산 취득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롯데건설(주)에서 다대동933-8번지상 토지 1,720.5m²를 공공시설 건설부지로 우리구에 기부채납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임.

2. 취득대상 재산현황

3. 관계법령

- 가. 지방자치법(제39조)
-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
-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조)
- 라.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4조)

4. 검토의견

□ 본 중요재산 취득승인의 견은

롯데건설(주)에서 사하구 다대동933-8번지상 토지 1,720.5m²를 공공시설 건설부지로 우리구에 기부채납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본 건에 대하여는 기부채납에 따른 법적근거와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검토 하였음.

□ 먼저, 기부채납에 따른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채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경우에는 이를 채납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단서 규정이 있으나,

본건의 경우는 나대지 상태의 직방형 토지로 재산관리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2007.11.28 우리구와 롯데건설(주)간에 체결된 양해각서 내용에도 기부에 따른 특이한 조건이 수반되지 않아 적법성 부분은 별다른 문제가 없음.

□ 다음, 기부채납 재산의 실효성 부분은

본 토지는 1986년 구획정리가 완료된 토지로 측면은 다대1동사와 접해있고, 전면은 중로3류 도로와 접해있어 앞으로 노인정 등 공공시설건립 부지로 활용도가 높을뿐 아니라

재산가치면에서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1,462백만원 상당으로 평가되고 있어 기부채납 재산의 실효성은 높게 나타남.

□ 결론적으로, 본 중요재산 취득 승인의 건은

기부채납에 따른 법적근거가 명확하고, 기부채납 행위의 적법성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기부채납 재산의 활용도와 가치도 높아 공유재산으로서 실효성도 충분히 갖추고 있으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 됨.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5호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7~11호 (생략)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①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채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또는 기부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채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 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당해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를 채납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5조(기부채납)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채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3. 기부의 목적
4. 가격
5. 도면

②대표자에 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각 기부자의 성명·주소 및 기부재산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기부자가 법 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재산의 사용기간 중 당해 기부재산을 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부서에 전대차 사업계획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법 제7조제2항에서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아니하는 것인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06.12.30>

1.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사용이 곤란한 경우
2. 재산가액 대비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
3.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4조(기부채납 원칙)①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의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한다.

②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